

2026년 동남권 스타트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통합 모집 공고

울산과학기술원(UNIST)은 동남권 스타트업의 다음 성장단계 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6년 동남권 스타트업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5개 세부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31일

울산과학기술원 총장

< 프로그램 총괄표 >

프로그램	선정 규모	지원규모	업력	12대 신산업	사업비 지급방식	발표평가
I. 수요연계 사업화						
① 수요기업 연계 구매전환 PoC 지원	4개사	100백만원 /파트너십	7년	업력 완화 조건	선지급 (A안/B안 선택)	9. 21.(월)
② 고객수요 R&D 고도화 지원	5개사	50백만원 /기업	7년	업력 완화 조건	선지출 후 정산	9. 21.(월)
II. 스케일업 지원						
③ 글로벌 고객사 발굴 프로그램	4개사	20백만원 /기업 + 운용사 밀착지원	7년	업력 완화 조건	선지출 후 정산	9. 22.(화)
④ 수도권 브릿지업 (Bridge-UP)	5개사	10~30백만원 /기업(차등)	7년	업력 완화 조건	1차 정액 지급 2차 성과 차등 지급	9. 22.(화)
⑤ 딥테크 스케일업 투자로드쇼	12개사	프로그램 제공	7년	업력 완화 조건	해당 없음	9. 18.(금)

□ 사업목적

- (공통) 동남권 스타트업이 고객·인재·자본을 확보하여 다음 성장 단계로 도약하도록 단계별·목적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운영
- (Ⅰ. 수요연계 사업화) 수요기업 및 고객사의 현장 수요와 요구 스펙을 제품에 반영하여 실제 매출과 납품 레퍼런스로 연결
- (Ⅱ. 스케일업 지원) 해외 판로, 수도권 거점·인재, 후속 투자유치를 지원하여 지역 스타트업의 성장 한계를 보완

□ 모집대상: 동남권(부산·울산·경남)에 본점·연구소·공장 또는 지점(사업장)을 보유한 스타트업

※ 신청가능 업력은 창업 7년 이내(12대 신산업 분야는 10년 이내)이며, 지점으로 소재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등록 및 임차(소유) 사실을 증빙하여야 함

□ 접수기간: 2026. 8. 31.(월) ~ 2026. 9. 14.(월) 18:00까지(전 프로그램 공통)

* 상기 기간 내 제출 완료 건에 한하여 인정하며, 마감시각 이후 별도 유예시간 없음

□ 협약(약정)기간 및 사업비 집행기간

프로그램	협약(약정) 형태 및 기간	수행 및 사업비 집행기간
① PoC 지원	UNIST-스타트업-수요기업 3자 협약 2026. 9. 30.(수) ~ 12. 31.(목)	2026. 10. 1.(목) ~ 11. 27.(금)
② R&D 고도화	UNIST-스타트업 2자 협약 2026. 9. 30.(수) ~ 12. 31.(목)	2026. 10. 1.(목) ~ 11. 27.(금)
③ 글로벌 고객사 발굴	지원금 지급 약정서 2026. 9. 28.(월) ~ 12. 31.(목)	2026. 10. 1.(목) ~ 11. 27.(금)
④ 수도권 브릿지업	UNIST-스타트업 2자 협약 2026. 9. 30.(수) ~ 12. 31.(목)	2026. 10. 1.(목) ~ 11. 27.(금)
⑤ 투자로드쇼	참가확약서 제출로 참여 확정	2026. 9. 30.(수) ~ 11. 27.(금)

□ 추진일정(안)

구 분	일 정		주요 내용
	시작일	종료일	
모집공고 및 접수	'26. 8. 31.(월)	'26. 9. 14.(월)	이메일 접수/ 프로그램 선택 후 신청
요건검토 및 서류평가	'26. 9. 15.(화)	'26. 9. 16.(수)	프로그램별 발표평가 대상 선발(선정규모의 1.5~1.6배수 내외) ※ 요건검토는 접수 기간 중 상시 처리
발표 평가	'26. 9. 18.(금)	'26. 9. 22.(화)	⑤ 9. 18.(금) 온라인 실시 ① 9. 21. 오전/ ② 9. 21. 오후 ③ 9. 22. 오전/ ④ 9. 22. 오후
최종 선정발표	'26. 9. 23.(수)	'26. 9. 23.(수)	벤처파운드리 홈페이지 게시
협약.약정 체결 및 오리엔테이션	'26. 9. 23.(수)	'26. 9. 30.(수)	①②④ 통합 협약체결식(9. 30.) 및 사업비 교육 ③ 지급 약정서 비대면 체결(9. 28.~29.) ⑤ 참가확약서 접수(~9. 29.)
프로그램 수행 및 사업비 집행	'26. 10. 1.(목)	'26. 11. 27.(금)	프로그램별 과제 수행 및 사업비 집행 (전 프로그램 10. 1. 개시/ ⑤ 실전 데모데이는 9. 30. 개시)
중간 점검	'26. 10. 26.(월)	'26. 10. 30.(금)	① 사업운영위원회 및 수요기업 현장실사 ②③ 1차 사업비 정산·지급/ ④ 서면평가
수도권 현장실사(④)	'26. 11. 16.(월)	'26. 11. 20.(금)	④ 기업별 수도권 거점 직접 방문
최종점검 및 정산	'26. 11. 30.(월)	'26. 12. 4.(금)	결과보고서·정산자료 제출(~12. 2.(수) 18:00) 후 최종사업운영위원회 개최, 사업비 정산 확정
성과 공유회	'26. 12. 8.(화)	'26. 12. 9.(수)	1일차(12. 8.) ①② / 2일차(12. 9.) ③④ 성과발표, 우수기업 시상, 특강, 네트워킹
최종 결과보고	'26. 12. 10.(목)	'26. 12. 10.(목)	최종 결과보고서 검토 완료 및 사업 종료

※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 상황 및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① 수요기업 연계 구매전환 PoC 지원

- 수요기업 현장 적용을 위한 PoC 솔루션 제작·도입 및 실증비용 (파트너십당 1억원 이내) 지원
- 협약체결 오리엔테이션(사업비 교육, 1:1 실행계획 컨설팅), 중간점검·현장실사, 최종점검 및 정산 지원
- 성과공유회 및 우수 파트너십 시상, 오픈이노베이션 특강 및 B2B 네트워킹

□ 사업비 지급구조 : [A안] / [B안] 선택제 (선지급)

구 분	[A안] 스타트업 자금 지원형	[B안] 수요기업 자금 지원형
지급대상	- 동남권 스타트업(주관기관)	- 동남권 수요기업(참여기관)
지원내용	- 스타트업의 PoC 솔루션 제작 비용(재료비, 외주용역비, 인건비, 기계·장치 등)	- 수요기업의 스타트업 솔루션 도입·구매비용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
지급시기	- 협약 후 집행계획서 확인→ 1차 50백만원 - 중간점검 시 증빙 검토→ 2차 50백만원	- PoC 솔루션 도입비용 세금계산서 제출 후 지급 (공급가액 기준)

※ [A안] 선택 기업은 잔액이 0원인 사업비 전용계좌를 개설·제출하고 해당 계좌로 집행

□ 비목별 지원내용

비 목	세부 인정 항목	불인정 항목
재료비	PoC 솔루션 제작에 직접 필요한 시제품 제작 재료, 부품, 시약 등 구입비	범용성 소모품 및 일반 사무용품
외주용역비	PoC 솔루션 커스터마이징·외주제작 비용 [B안] 수요기업의 스타트업 솔루션 직접 구매·도입비	대표자 및 특수관계인 관련 기업과의 용역

인건비	PoC 과제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스타트업 내부 전담인력 급여	대표자 인건비, 4대 보험 미가입자·프리랜서 비용
기계·장치	PoC 수행을 위한 연구장비, 시험설비, 전용 기계장치 구매·임차비용	범용성 장비 및 자산성 사무기기(PC, 노트북 등)

② 고객수요 R&D 고도화 지원

- 고객사가 요구한 추가 기능·성능 개선 스펙을 반영하기 위한 시제품 제작·외주개발·전담인력 인건비·장비 구매(임차) 비용을 기업당 5천만원 이내 지원
- 협약체결 오리엔테이션, 중간점검·최종점검 사업운영위원회 운영 및 정산 지원

□ 사업비 지급구조 : 선지출 후 정산

- 기업이 자체예산으로 우선 집행한 후 비목별 적격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운영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확정된 금액을 정산 지급

구 분	시 기	정산·지급 내용
1차 정산	중간점검 2026. 10. 26.(월)	중간보고서 및 1차 사업비 집행 증빙을 검토하여 인정된 금액을 정산 지급
최종 정산	최종점검 2026. 12. 4.(금)	최종 결과보고서 및 잔여 집행 증빙을 검토하여 인정된 금액을 정산 지급 (미집행 잔액 및 불인정 금액은 지급하지 않음)

※ 사업비가 선지급되지 않으므로, 신청 전 자체예산으로 사업비를 우선 집행할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비목별 지원내용

비 목	세부 인정 항목	불인정 항목
재료비	R&D 고도화에 직접 필요한 시제품 제작 재료, 부품, 시약 등 구입비	범용성 소모품 및 일반 사무용품
외주용역비	R&D 고도화에 직접 필요한 외주제작·시험분석·설계 용역비	대표자 및 특수관계인 관련 기업과의 용역

인건비	R&D 고도화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스타트업 내부 전담인력 급여	대표자 인건비, 4대 보험 미가입자·프리랜서 비용
기계·장치	R&D 고도화에 직접 필요한 연구장비, 시험설비, 전용 기계장치 구매·임차비용	범용성 장비 및 자산성 사무기기(PC, 노트북 등)

③ 글로벌 고객사 발굴 프로그램

구 분	지원 세부내용
① 솔루션 현지화/ 개별 멘토링	- 운용사 전담 전문가와 1:1 맞춤형 심층 멘토링(기업별 3회) - 1회차 시장 진단: 해외 진출 제품·서비스 경쟁력 분석, 현지 규제·인증·진입장벽 점검 - 2회차 현지화: 현지 비즈니스모델 수립, 수익모델·유통구조 보완 - 3회차 고객 개발: 타겟 고객군 심층분석, 바이어별 접근 시나리오 수립
② 타겟 고객사 리스트업 / 및 컨설팅	- 운용사 보유 현지 네트워크·DB를 활용한 핀포인트 해외 바이어·고객사 리스트업(기업당 5개사 이상) - PT 제안서 및 피치덱 고도화 컨설팅(기업별 2회)
③ 해외 고객사 미팅 주선	- 타겟 고객사 의사결정권자와의 1:1 비즈니스 미팅 주선(기업당 3개사 이상) - 운용사 전담 코디네이터 미팅 동행 및 후속 협의 지원
④ 해외진출 사업화 자금	- 해외 출장, 현지 거점 구축, 마케팅 등 글로벌 비즈니스 직접경비를 기업당 2천만원 이내 지원

※ 해외 네트워크를 보유한 글로벌 전문 운용사(AC/VC)와 공동 운영하며, 선정평가 단계부터 운용사 전문가가 평가위원으로 배석함

□ 비목별 지원내용

비 목	세부 인정 항목
해외 출장비	해외 고객사 미팅을 위한 임직원 항공료 및 현지 숙박비
해외 거점 임대료	해외 현지 지점·공유오피스 월 임대료 및 사용료
전담인력 인건비	글로벌 사업 추진 목적으로 지정 또는 신규 채용된 담당 인력 급여(대표자 인건비 지원 불가)
기타 필요경비	현지 마케팅비, 번역비, 법률·계약 자문료 등

④ 수도권 브릿지업(Bridge-UP)

구 분	지원 세부내용
① 수도권 거점 확보	수도권 지역 내 개설한 거점·부설연구소·공유오피스 등의 월 임대료 및 사용료
② 수도권 인재 유치	수도권 거점 근무 목적으로 2026년 신규 채용된 인력의 인건비(급여)
③ 채용 및 기업 홍보	수도권 인재 유치를 위한 채용광고 게시비, 채용박람회 참가비, 헤드헌팅 수수료

□ 지원금 지급구조: 1차 일괄 지급+ 2차 성과 차등 지급

※ 선정기업 전체에 1차 지원금 5백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중간점검(20%)·현장실사(30%)·최종발표(50%) 결과를 합산한 최종순위에 따라 2차 지원금을 차등 지급함			
최종순위	1차 지원금	2차 지원금	총 지원금
1위	5백만원	25백만원	30백만원
2위	5백만원	20백만원	25백만원
3위	5백만원	15백만원	20백만원
4위	5백만원	10백만원	15백만원
5위	5백만원	5백만원	10백만원

- ※ 1차 지원금(5백만원)은 협약체결 후 2026. 10. 1.(목)~10. 8.(목) 전 선정기업에 일괄 지급하며, 중간점검·현장실사 시 집행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 2차 지원금은 최종발표(2026. 12. 9.(수)) 결과에 따라 최종순위를 확정하고 2026. 12. 10.(목)까지 지급 결의를 완료하며, 실제 지급은 2026년 12월 중에 처리함. 상금 성격으로 지급되므로 집행 증빙 제출 의무는 없으나, 지급 시 관계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등 필요한 조치를 거쳐 지급함
- ※ 수도권 거점의 실제 운영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2026. 11. 16.(월)~11. 20.(금) 기업별 수도권 거점을 직접 방문하는 현장실사를 실시함

□ 1차 지원금 비목별 집행기준

지원 비목	집행 가능 항목	불인정 항목
① 거점 확보 (임대료)	수도권 지역 내 개설한 거점·부설연구소·공유오피스 등의 월 임대료 및 사용료	부동산 임차 보증금, 건물 관리비·공과금, 중개 수수료
② 인재 유치 (인건비)	수도권 거점 근무 목적으로 2026년 신규 채용된 인력의 인건비(급여)	대표자 및 기존 임직원 급여, 4대 보험 미가입자·프리랜서 비용
③ 채용·기업 홍보 (홍보비)	채용공고 게시비, 채용박람회 참가비, 헤드헌팅 수수료	수도권 거점·채용과 무관한 본사 마케팅비, 접대비, 기프트콘 발행비

⑤ 딥테크 스케일업 투자로드쇼

- 투자유치 역량강화 프로그램 전 과정을 무상 제공하며, 현금 지원은 없음

구 분	일 정	지원 세부내용
① 실전 데모 데이	2026. 9. 30.(수) ~ 10. 21.(수)	온라인 주 1회× 4주 지방펀드 보유 VC 심사역 매주 4명 참여 모의피칭
② 피치덱 디자인 제작지원	2026. 10. 15.(목) ~ 10. 28.(수)	전문 디자이너를 통한 IR Deck 디자인 고도화(① 실전데모데이와 병행 운영)
③ 스케일업 투자로드쇼 본행사	2026. 10. 29.(목)	국내 Top VC 핵심운용인력 30명 초청 IR 행사(기업당 15분)
④ 펀드테마별 VC 심사역 매칭	2026. 11. 2.(월) ~ 11. 27.(금)	기업당 심사역 4명과 1:1 심층매칭
⑤ 사후관리	2026. 12. ~ 2027. 6.	후속 미팅 관리 및 투자라운드 진행상황 모니터링

- ※ 선정규모 12개사는 Pre A 단계 6개사, Series A 단계 6개사로 구분하여 선발하며, 신청가능 업력은 창업 7년 이내(2019. 9. 15. 이후 창업)이나, 12대 신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 10년 이내(2016. 9. 15. 이후 창업)까지 신청할 수 있음. 한쪽 트랙 신청 또는 적격자가 미달하는 경우 Pre A, Series A 단계별 선정규모를 조정할 수 있음.
- ※ 본 프로그램은 협약체결 및 오리엔테이션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으며, 참가확약서 제출로 참여가 확정됨

□ 사업비 집행 기준(①~④ 공통)

- (집행계획 준수) 사업비는 협약(약정) 시确定的한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비목 간 예산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운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부가가치세·관세 제외) 부가가치세, 관세 등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기업 자부담 처리를 원칙으로 함
- (적격증빙 의무) 모든 사업비 집행은 적격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점검 시 정산 제출하여야 함
- (집행 범위) 사업목적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한하여 인정하며, 프로그램별 사업비 집행기간 내에 집행한 비용만 인정함
- (중복 금지) 사업비는 타 정부·지자체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집행할 수 없으며, 본 공고의 복수 프로그램에 선정된 경우에도 동일한 비목·산출근거의 비용을 중복 집행할 수 없음

※ 비목별 세부 집행기준 및 필수 제출 증빙서류는 협약(약정) 체결 시 교부하는 「사업비 집행 안내자료」를 통해 안내하며, 협약서(약정서)가 정하는 바에 따름

3

신청자격 및 요건

□ 공통 신청자격(전 프로그램)

- (기업 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의 대표자

- (업력 요건) 접수마감일(2026. 9. 14.) 기준 창업 7년 이내(2019. 9. 15. 이후 창업)인 기업. 다만 12대 신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은 창업 10년 이내(2016. 9. 15. 이후 창업)까지 신청할 수 있음
 - (소재지 요건) 접수마감일(2026. 9. 14.) 기준 동남권(부산·울산·경남)에 아래①~③ 중 하나 이상을 보유한 기업
 - ① 본점(주사무소)
 - ② 연구소(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또는 공장
 - ③ 지점(종된 사업장) 또는 동남권 소재 창업보육센터·창업지원시설 입주 사업장
- ※ ③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등록 및 임차(소유) 사실을 증빙하여야 함(「신청자격 세부조건」 참조)

□ 프로그램별 신청자격

프로그램	12대 신산업 적용	프로그램별 추가 요건
① PoC 지원	업력 완화 조건	수요기업과 파트너십 구성 및 「수요기업 PoC 협력의향서(확약서)」 제출 필수
② R&D 고도화	업력 완화 조건	고객사 요구 스펙이 특정된 기업 (관련 인성서류 제출 시 평가 우대)
③ 글로벌 고객사 발굴	업력 완화 조건	해외시장 진출 및 글로벌 고객사 발굴을 희망하는 기업
④ 수도권 브릿지업	업력 완화 조건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거점(사무소)을 이미 구축하였거나 협약기간 내 구축 예정인 기업
⑤ 투자로드쇼	업력 완화 조건	Seed 완료 후 Pre A 희망 또는 Pre A 완료 후 Series A 희망 기업

<신청자격 세부조건>

■ 업력 산정 기준

- 접수마감일(2026. 9. 14.) 기준 창업 7년 이내→ 2019. 9. 15. 이후 창업한 기업/ 12대 신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 10년 이내→ 2016. 9. 15. 이후 창업한 기업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연월일」,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회

사성립연월일」 기준이며, 다수의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자의 창업 일 기준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소재지 요건(전 프로그램 공통)

- 신청 주체는 본점 사업자로 하되, 소재지 요건은 동남권에 본점·연구소·공장·지점(종된 사업장) 중 하나를 보유하면 충족한 것으로 봄(예: 수도권에 본점이 있고 동남권에 공장·연구소 또는 지점을 보유한 기업도 신청 가능)
- 지점(종된 사업장)으로 소재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아래를 모두 갖추어야 함
 - (등록) 접수마감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상 지점 등기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상 종된 사업장 등록이 되어 있을 것
 - (장소) 해당 사업장의 임차 또는 소유 사실이 확인될 것
- 증빙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 공장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임대차계약서(입주계약서)중 해당 서류

■ 기술분야 요건(12대 신산업)

- (적용 범위) ①~⑤ 전 프로그램 공통으로, 창업 7년을 초과한 기업이 창업 10년 이내 까지 신청하기 위한 업력 완화 조건임
- (12대 신산업) AI / 반도체/ 양자·보안/ 로봇/ 모빌리티/ 생명·신약/ 헬스케어/ 콘텐츠/ 방산·우주항공·해양/ 친환경/ 에너지·핵융합/ 센서·공정
- (판정 시점) ①~⑤의 업력 완화 적용 여부는 요건검토 단계에서 1차 확인하고, 서류 평가 단계에서 평가위원회가 분야 부합 여부(적합·부적합)를 최종 검토하며, 운영기관이 최종 판단함. 운영기관은 검토에 필요한 경우 보완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참여신청서의 「기술분야」란에 해당 분야를 선택하여 기재하고 보유 기술·제품과의 관련성을 서술하여야 하며, 복수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주된 분야 1개를 선택
- 특허등록원부·벤처기업확인서 관련 자료를 보유한 경우 제출을 권장하며(제출 필수가 아님), 제출한 경우 분야 해당 여부 검토에 우선 반영함
-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평가대상 제외, 선정 취소,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① PoC 지원— 파트너십 구성 요건

- (참여기관: 수요기업) 동남권 내 본사·연구소·공장 중 하나 이상을 보유하고 스타트업 솔루션의 현장 도입·실증이 가능한 기업. 업력·기업규모의 제한은 없음
- 스타트업과 수요기업이 서로 특수관계(계열회사,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 대표자가 동일하거나 친족관계, 일방이 상대방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이상을 보유하거나 최대주주인 경우 등)에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 다만 수요기업이 재무적·전략적 투자자로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미만인면서 최대주주가 아니고 대표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음
- 수요기업은 복수의 파트너십에 참여할 수 있으나 최종 선정은 수요기업당 1건을 원칙으로 함

■ ② R&D 고도화— 고객수요 인정

- 고객사의 추가 고도화 요구사항 인정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평가 시 우대하며, 고객사는 협약 당사자가 아님
 - 인정서류 : 요구사항 명세서, 협의 회의록, 이메일 협의 내역, 견적·발주 예정 문서, 「고객사 요구사항 확인서」, 구매의향서(LOI) 또는 파트너십 협약서 등

■ ③ 투자로드쇼— 투자유치 실적 인정 범위

- (인정) 신주 인수(유상증자), 무담보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조건부지분 인수계약(SAFE)에 따른 투자로서 투자금 납입이 완료된건
- (불인정) 투자의향서·텀시트 등 구속력 없는 문서, 융자(대출) 및 담보부 사채, 정부 출연금·보조금, 매출채권, 납입이 완료되지 않은 투자 약정
- (증빙서류) 유형별로 아래 서류를 제출
 - 신주 인수: 투자계약서 및 주주명부(또는 등기사항증명서상 자본금 변동 확인 서류)

- CB·BW : 사채 인수계약서 및 사채원부(또는 납입 확인 서류)
- SAFE : 조건부지분인수계약서 및 투자금 납입 증빙(입금 확인서·거래내역)
- (라운드 판정) Seed·Pre A·Series A 구분은 제출 증빙과 투자 규모·시점을 종합하여 운영기관이 최종 판단하며, 필요한 경우 보완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투자계약서에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경우 요건 확인에 필요한 부분 외에는 가림(마스킹) 처리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중복 신청 및 중복 선정

- 1개 기업은 프로그램별로 각 1건씩 신청할 수 있으며, 복수의 프로그램에 동시 신청할 수 있음(동일 프로그램 내 복수 신청 시 최종 접수분을 기준으로 평가)
- 복수의 프로그램에 중복 선정되는 것이 가능하며, 프로그램별로 협약(약정)·점검·정산이 각각 진행됨
- 다만 각 프로그램의 과제는 내용상 구분되어야 하며, 동일한 비목·산출근거의 비용을 두 개 이상의 프로그램에서 중복하여 집행할 수 없음. 중복 선정 시 협약(약정) 체결 단계에서 프로그램별 집행계획을 교차 검증하여 중복 여부를 확인함
- 중복 선정 기업은 프로그램별로 사업비 계좌 및 증빙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함

□ 신청 제외 대상(전 프로그램 공통)

* 법인인 기업의 경우, 법인과 대표자 모두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 ① 조건 예외 대상(접수 마감일 기준)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 ② 조건 예외 대상(접수 마감일 기준) >
1.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압류·매각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④ 신청일 기준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자(기업)
 - 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⑥ 울산과학기술원 및 중앙정부·지자체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 ⑦ 동일한 과제로 본 프로그램의 사업비 집행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에 타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지원사업으로부터 동일한 비목의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는 자(기업)
- < ⑦ 조건 예외 대상 >
- 1. 종전 지원사업이 접수 마감일 이전에 종료된 경우
 - 2. 지원 범위(비목 또는 과제 내용)가 중복되지 않는 후속·확장 과제인 경우
- * 본 공고 내 복수 프로그램의 중복 선정은 본 항목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⑧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이익 환수 또는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받고 그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자(기업)
 - ⑨ 본 프로그램의 기획·운영·평가에 직접 관여하는 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대표자인 자(기업)
 - ⑩ 기타 울산과학기술원 총장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① PoC 지원의 참여기관(수요기업)에 대한 제외사유 적용 범위는 사업비 지원구조에 따라 다르며, [A안] 선택 시 수요기업에는④·⑨ 항목만 적용하고, [B안] 선택 시①·②·④·⑤ 항목의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선정 이후라도 신청자격 미충족 또는 제외사유 해당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및 협약(약정)이 취소되며, 기지급 사업비는 환수됨

4

신청 및 접수

□ 신청·접수기간: 2026. 8. 31.(월) ~ 2026. 9. 14.(월) 18:00까지

* 상기 기간 내 제출 완료 건에 한하여 인정하며, 마감시각 이후 별도 유예시간 없음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제출서류 일체를 전자파일 형태로 송부)

- 제출 이메일: vfexit@unist.ac.kr
- 제출 파일: PDF 파일로 변환하여 제출
- 복수 프로그램에 신청하는 경우 프로그램별로 각각 별도의 메일로 제출하여야 함

□ 프로그램별 발송 이메일 제목

프로그램	이메일 제목
① PoC 지원	[PoC] 신청기업명_수요기업명
② R&D 고도화	[R&D] 신청기업명_고객사명
③ 글로벌 고객사 발굴	[글로벌] 신청기업명
④ 수도권 브릿지업	[브릿지업] 신청기업명
⑤ 투자로드쇼	[투자로드쇼] 신청기업명

※ 접수 마감일에는 이메일 송·수신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 제출을 권장함

□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2026. 1. 1. 이후 발행한 것에 한하여 인정

NO	제출서류	①	②	③	④	⑤	비 고
1	참여신청서 및 세부계획서	●	●	●	●	●	별지1 (프로그램 별 서식)
2	수요기업 PoC 협력의향서(확약서)	●	-	-	-	-	별지2-A / 직인 날인
3	고객사 요구사항 확인서	-	△	-	-	-	별지2-B / 우대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	●	●	별지3
5	청렴 및 기술보호 이행 서약서	●	●	●	●	●	별지4
6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	●	① 수요기업 포함

7	법인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 증명서)	●	●	●	●	●	업력(창업일) 증빙 / 발급일 3개월 이내 개인사업자는 사 업자등록증명
8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	●	●	●	발급일 1개월 이 내
9	동남권 소재 증빙서류	●	●	●	●	●	등기부·사업자등록 증명·공장등록증· 연구소 인정서 중 1부(지점으로 총 족 시 임대차계약 서 추가, 보육센터 입주 시 입주계약 서)
10	기술분야(12대 신산업) 증빙 서류	△	△	△	△	△	①~⑤ 선택(제출 시 분야 검토에 우선 반영) 특허등록원부·벤처 기업확인서·연구소 인정서 등
11	고객사 협의 내역	-	△	-	-	-	요구사항 명세서, 회의록, 구매의향 서(LOI), 파트너십 협약서 포함 등
12	수도권 거점 관련 증빙	-	-	-	△	-	임대차계약서 등 (구축 완료 시)
13	투자계약서(CB-SAFE 계약서 포함) 및 투자금 납입 증빙	-	-	-	-	●	Seed 또는 Pre A 유치 증빙·유형별 필요서류는「신청 자격 세부조건」 참조
14	최근 3개년 재무제표	△	△	△	△	△	설립 3년 미만은 해당 연도분만
15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 업 확인서	△	△	△	△	△	보유 시 제출(선 택). 미보유 시 참 여신청서의「기업 규모 자기확인」란 에 기재하고, 선정 시 협약(약정) 체 결 전까지 제출. 발급이 지연되는 경우 발급 신청 접수내역을 제출 하고 사업비 1차 지급 전까지 확인 서를 제출 ※ 발급에 2~3주 가 소요되므로 신 청과 동시에 발급 신청 권장 (sminfo.mss.go.kr / www.mme.or.kr)

※ ● 필수/ △ 해당 시 또는 선택(제출 시 평가 우대) / - 해당 없음

※ 10번은 전 프로그램 공통으로 창업 7년을 초과한 기업이 12대 신산업 업력 완화를 적용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제출을 권장함

- ※ 복수 프로그램에 신청하는 경우 4~15번의 공통 증빙서류는 1부만 제출하여도 무방하며, 1~3번(참여신청서·협력의향서·고객사 요구사항 확인서)은 프로그램별로 각각 제출하여야 함
- ※ 제출서류 미비·누락 시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한 내 보완하지 않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신청 시 제출하는 별지 서식(별지1~4)은 UNIST 벤처파운드리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며, 별지5 참가확약서는⑤ 선정기업이 선정 통보 후 별도로 제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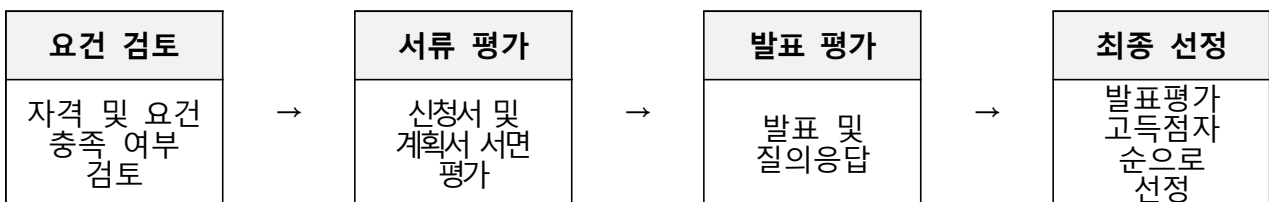
□ 문의처

담당부서	연락처	이메일
UNIST 벤처파운드리 EXIT전략팀	052-217-1592	vfexit@unist.ac.kr

5

평가 및 선정

- 평가절차: 총 2단계 평가(서류 → 발표)를 통해 프로그램별로 최종 선정



- ※ 요건 및 자격검토는 모든 과정에서 진행되며, 요건을 불충족할 경우 단계와 관계없이 탈락 처리
- ※ 평가점수가 100점 만점 기준 60점에 미달되는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 ※ 프로그램별 신청 건수가 발표평가 대상 배수(선정규모의 1.5~1.6배수) 미만인 경우 서류평가를 생략할 수 있음
- ※ 평가는 프로그램별로 분리하여 진행하며, 복수 프로그램에 신청한 기업은 프로그램별로 각각 평가받음
- ※ 서류평가 시 평가위원회가 12대 신산업 분야 부합 여부(적합·부적합)를 함께 검토하며,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창업 7년을 초과한 기업은 업력 요건 미충족으로 배점과 관계없이 선발 대상에서 제외됨

□ 프로그램별 발표평가 일정 및 방법

프로그램	평가일시	평가시간	비 고
⑤ 투자로드쇼	2026. 9. 18.(금)	15분 이내	온라인 발표평가
① PoC 지원	2026. 9. 21.(월)	25분 이내 (발표 15 + 질의 10)	수요기업 담당자 동석 권장
② R&D 고도화	2026. 9. 21.(월)	20분 이내 (발표 12 + 질의 8)	고객사 담당자 동석 권장
③ 글로벌 고객사 발굴	2026. 9. 22.(화)	20분 이내 (발표 12 + 질의 8)	글로벌 운용사 평가위원 배석
④ 수도권 브릿지업	2026. 9. 22.(화)	20분 이내 (발표 12 + 질의 8)	-

※ 발표평가 자료는 신청 시 제출한 참여신청서 및 세부계획서(별지1)로 같음하며, 별도의 발표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음

※ 대표자가 직접 참여하여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대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⑤ 제외) 상황에 따라 온라인 평가로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 시간·장소는 발표평가 대상 통보 시 개별 안내함

□ 프로그램별 평가지표

① 수요기업 연계 구매전환 PoC 지원

평가영역	세부 평가지표	배점
PoC 수행 적합성	· PoC 추진 필요성 및 목표의 명확성 · 스타트업 솔루션과 수요기업 수요 간 적합성 · PoC 추진 일정 및 과제 수행 로드맵의 타당성	30
솔루션 경쟁력 및 혁신성	· 보유 제품·솔루션의 기술적 차별성 및 우수성 · 수요기업 현장 니즈 및 산업 문제 해결 기여도	30
사업화 및 후속성과 가능성	· PoC 성공 시 수요기업의 정식 구매·공급계약 전환 가능성 · 타 수요기업 및 유사 산업군으로의 확장 가능성	25
사업비 및 실행역량	· 사업비 집행계획의 타당성 및 예산 산출근거의 적정성 · 파트너십 간 사전협의 정도 및 사업 추진의지	15
합 계		100

② 고객수요 R&D 고도화 지원

평가영역	세부 평가지표	배점
고객 수요 적합성	· 고객사 구매의향서(LOI) 또는 파트너십 구성의 적정성 · 고객 요구사항의 구체성 및 기술 고도화 필요성	30

R&D 수행 가능성	· 보유 원천기술의 차별성 및 우수성 · 고객 요구사항을 반영한 기술개발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추진 일정 및 과제 수행 로드맵의 타당성	30
사업화 및 후속성과 가능성	· 기술 고도화 완료 후 고객사와의 정식 구매·공급계약 전환 가능성 · 실증 레퍼런스 확보를 통한 타 고객사 및 유사 산업군 확장 가능성	25
사업비 구성	· 사업비 집행계획의 타당성 및 예산 산출근거의 적정성 · 자체예산 우선 집행(선지출) 가능성 및 수행의지	15
합 계		100

③ 글로벌 고객사 발굴 프로그램

평가영역	세부 평가지표	배점
글로벌 시장 진출 적합성	· 해외시장 진출의 필요성 및 추진 목적의 명확성 · 목표 국가 및 시장 선정의 타당성, 진출전략의 구체성	25
제품·서비스 경쟁력	· 제품·서비스의 차별성 및 기술 경쟁력 · 해외시장 적용 가능성 및 현지화 가능성	30
글로벌 고객 매칭 가능성	· 타겟 고객 정의 및 고객 발굴 전략의 적정성 · 고객사 미팅 성사 가능성 및 PoC·MOU·계약 등 후속 성과 가능성	35
참여 의지 및 실행역량	· 프로그램 참여 의지 및 대표자의 적극성 · 멘토링·해외 미팅 참여 가능성, 사업화자금 활용계획의 구체성	10
합 계		100

④-1 수도권 브릿지업 - 선정 시 평가기준

평가영역	세부 평가지표	배점
수도권 거점 확보 타당성	· 수도권 거점 개설 필요성 및 타당성 · 거점 구축 일정·위치·공간 확보 계획의 구체성 및 준비도	25
수도권 인재채용 실현가능성	· 신규 인재 채용 목표의 적정성 및 채용 절차의 구체성 · 채용 인력의 직무 적합성 및 거점 근무 유지를 위한 고용 안정성	30
수도권 사업화 및 성장역량	· 수도권 고객사·투자사·파트너사 확보 등 사업화 성과 창출 가능성 · 기업의 기술성·시장성 및 수도권 시장 진입을 통한 성장 역량	30
향후 활용계획 및 예산 적정성	· 지원사업 종료 후 수도권 거점의 지속 운영 및 중장기 자립 계획 · 지원금(임대료·인건비·홍보비) 집행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15
합 계		100

④-2 수도권 브릿지업 - 선정 후 2차 지원금 차등지급 기준

- 선정 이후 3단계 성과평가를 거쳐 최종순위를 확정하고 2차 지원금을 차등 지급함
- 최종환산점수 = 중간점검 점수 × 20% + 현장실사 점수 × 30% + 최종발표 점수 × 50%

구 분	시 기	주요 평가내용	반영률
중간점검	2026. 10. 30.(금)	외부위원 3명 서면평가(거점 구축 및 채용 진척도, 행정 준수성)	20%
현장실사	2026. 11. 16.(월) ~ 11. 20.(금)	수도권 거점 직접 방문(거점 구축도, 업무환경 조성도, 채용인력 근무 현황, 본사-거점 운영체계)	30%
최종발표	2026. 12. 9.(수)	성과공유회 현장 발표평가(계획대비 진척도, 사업 추진 성과, 향후 거점 활용계획)	50%

※ 현장실사는 사무실·현판·사무기기 등 거점 공간의 실제 사용 여부와 신규채용 인력의 근무 현황을 현장 면담을 통해 확인함

⑤ 딥테크 스케일업 투자로드쇼

평가영역	세부 평가지표	배점
기술 경쟁력	· 보유 기술의 독창성 및 기술적 완성도(12대 신산업 분야 부합도 및 딥테크 기술의 원천성 포함) · 지식재산권 확보 현황 및 기술 보호 전략 · 경쟁기업 대비 기술적 우위 및 진입장벽	30
시장성	· 목표시장의 규모(TAM/SAM/SOM) 및 성장성 · 목표시장 내 경쟁구도 및 시장 진입 전략	25
성장성	· 비즈니스 모델의 수익성 및 확장 가능성 · 매출·고용 등 성장 실적 및 향후 성장 계획	15
투자유치 준비도	· IR 자료의 논리적 완성도 및 투자 스토리 · 기 투자유치 실적 및 후속 라운드 추진 계획의 구체성	30
합 계		100

□ 최종선정

- 프로그램별 발표평가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며, 서류평가 결과는 발표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 평가위원회는 평가결과 및 사업비 집행계획의 적정성을 종합 고려하여 지원금액을 조정하여 확정할 수 있음
- 프로그램별로 선정 예비후보자를 둘 수 있으며, 선정대상 중 포기가 발생하거나 기타 사유로 선정이 취소될 경우 예비후보자를 최종 선정할 수 있음
- 평가결과 신청기업의 역량이 프로그램의 운영목적 및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 예정 규모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프로그램별 선정규모 및 지원예산은 사업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음

6

유의사항

◆ 본 프로그램에 신청하는 기업은 관련 법령 및 아래 사항에 유의바랍니다.

- ① 본 공고의 프로그램은 참여기업의 사업화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지원금 전액 환수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②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③ 참여신청서 및 세부계획서를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④ 신청 과정에서 제3자(컨설턴트 등)가 선정을 담보로 특정 사례를 요구하거나 접근해 온 경우, 운영기관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전 프로그램 공통)

- 신청은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 신청자가 제출서류상의 대표자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신청기업은 자사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참여신청서에 프로그램을 표기하지 않았거나 프로그램과 제출서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운영기관이 정정을 요청할 수 있음

- 복수 프로그램에 동시 신청·선정이 가능하나, 동일한 비목·산출근거의 비용을 두 개 이상의 프로그램에서 중복 집행할 수 없으며, 중복 집행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불인정 처리 및 환수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위조·변조·표절·도용·누락이 확인되는 경우 평가대상 제외, 선정 취소,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하며, 접수 마감시각 이후에는 제출한 일체의 내용에 대한 수정 및 삭제가 불가함
- 신청자는 참여신청서에 기재한 연락처를 현행화하여야 하며, 기재 오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발표평가는 신청기업 대표자가 직접 참여하여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대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이 위임장을 제출하고 발표할 수 있음
- 평가결과(평가점수) 및 평가위원 관련 정보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원칙적으로 불가함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평가대상 제외, 선정 취소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지며, 운영기관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확인을 위하여 대표자 동의하에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선정기업은 프로그램별로 정해진 방식에 따라 협약(약정) 또는 참가확약서를 기한 내에 체결·제출하여야 하며(①②④ 2026. 9. 30. 통합 협약체결식 / ③ 9. 28.~29. 서면 약정 / ⑤ ~9. 29. 참가확약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선정이 취소되고 차순위자(예비후보자)에게 참여 기회가 부여될 수 있음

- 협약(약정) 이후 수요기업·고객사 및 과제 내용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운영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운영위원회의 심의·승인을 받아야 함
- 협약기간 중 대표자 변경, 휴·폐업, 소재지 이전, 회생·파산 신청 등 중요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운영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 해약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
- 협약기간 중 동남권 사업장을 폐쇄·이전하여 소재지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 즉시 운영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은 협약 해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선정기업은 중간점검·현장실사·최종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사업비 지급이 중단되거나 기지급액이 환수될 수 있음
- 선정기업은 사업비 집행 마감(2026. 11. 27.(금)) 이후 2026. 12. 2.(수) 18:00까지 최종 결과보고서, 사업비 정산서류 및 사업성과를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UNIST에 제출하여야 함
- 선정기업은 성과공유회(2026. 12. 8.(화)~12. 9.(수))에 반드시 참석하여 수행성과를 발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는 경우 잔여 사업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선정기업은 협약 종료 이후 3년간 UNIST 또는 사업관리기관의 과제 진행 현황 확인, 관련 서류의 열람, 성과조사(매출·고용·후속계약·투자유치 등) 자료 제출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수행성과 및 우수사례는 UNIST의 보도자료·홈페이지·성과집 등 홍보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사전 협의를 통해 공개 범위를 조정함
- 사업비는 사업목적과 직접 관련된 용도로 프로그램별 집행기간 내에

- 집행한 비용만 인정되며, 집행기간 이전 또는 이후 집행분과 부가가치세·관세 등 사후 환급 가능 금액은 불인정(기업 자부담) 처리됨
- 인건비는 전담인력의 실제 업무 투입 정도를 고려하여 사업운영위원회가 인정 금액을 결정하며, 대표자 인건비 및 4대보험 미가입자·프리랜서 비용은 인정하지 않음
 - 대표자 및 특수관계인이 소유·경영하는 기업과의 거래(용역·구매 등)는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며, 타 정부·지자체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집행할 수 없음
 - 미집행 잔액 및 불인정 금액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비 지급(정산)은 중간점검 결과에 따라 조정·중단될 수 있음
 - 과제 수행 과정에서 새롭게 창출된 지식재산권은 이를 창출한 당사자에게 귀속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으로 창출한 경우 협약 및 당사자 간 별도 합의에 따라 지분을 정함
 - 기술탈취,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아이디어 도용 등이 발생한 경우 운영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사실 확인 시 협약 해약, 지원금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산업기술 등 보호대상 기술이 포함된 경우 신청 시 이를 명시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보안조치를 준수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신청·평가·협약·정산 및 성과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며, 신청기업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3)를 제출하여야 함(동의 거부 시 신청·접수 및 평가가 제한될 수 있음)
 - 선정기업이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프로그램별 유의사항

- [①] 「수요기업 PoC 협력의향서(확약서)」 미제출 시 요건 미충족으로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스타트업과 수요기업이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 [①] 수요기업 현장에서의 실증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 및 수요기업의 안전·보안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실증 과정에서 발생한 인적·물적 사고 및 손해에 대한 책임은 관계 법령 및 3자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UNIST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 [①] 신청기업이 본 프로그램 참여 이전부터 보유한 기술·솔루션에 대한 권리는 과제 수행과 관계없이 신청기업에 귀속되며, 수요기업은 이를 침해하거나 무단으로 사용·복제·역설계할 수 없음
- [①] 신청기업과 수요기업은 상호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며, 수요기업이 신청기업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요구목적, 비밀유지 방법, 권리귀속 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 [②, ③] 사업비를 선지급하지 않는 「선지출 후 정산」 방식이므로, 신청 전 자체예산으로 사업비를 우선 집행할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자체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집행하지 못한 금액은 지급되지 않음
- [②] 고객사의 추가 고도화 요구사항이 문서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③] 해외 출장 시 여권·비자 발급, 현지 안전 확보 등은 신청기

업이 자체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며, 해외 체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UNIST는 책임을 지지 않음

- [④] 2차 지원금은 최종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상금 성격의 지원금으로, 최종발표(12. 9.) 결과에 따라 12. 10.까지 지급 결의를 완료하고 12월 중 실지급하며, 지급 시 관계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등 필요한 조치를 거침. 수도권 거점을 형식적으로만 등록하고 실제 상주·운영하지 않거나 신규 채용인력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사실이 현장실사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협약 해약, 지원금 전액 환수 및 참여제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⑤] 현금 지원이 없는 현물(프로그램) 제공 사업이며, 투자유치 성사 여부는 투자자와 기업 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됨. 참가기업은 실전데모데이·본행사·1:1 매칭 등 필수 일정에 모두 참여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는 경우 참가 자격이 취소될 수 있음

□ 관련 법령 및 규정

구 분	내 용
근거 법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5조(유망 신산업·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 - 「중소기업기본법」,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 본 프로그램 모집공고문 및 프로그램별 협약서(2자·3자)·약정서·참가확약서(부속 합의 포함)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협약서(약정서) 및 협약 시 교부하는 안내자료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해당 문서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운영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 본 공고 내용은 사업 추진 상황 및 예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UNIST 벤처파운드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함

[별지 서식 안내]

별지 서식 목록

아래 별지 서식은 UNIST 벤처파운드리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서식명	대상 프로그램
별지1-①	참여신청서 및 PoC 세부계획서	① 수요기업 연계 구매전환 PoC 지원
별지1-②	참여신청서 및 R&D 고도화 세부계획서	② 고객수요 R&D 고도화 지원
별지1-③	참여신청서 및 글로벌 진출 세부계획서	③ 글로벌 고객사 발굴 프로그램
별지1-④	참여신청서 및 수도권 진출 세부계획서	④ 수도권 브릿지업
별지1-⑤	참여신청서 및 투자유치 계획서	⑤ 딥테크 스케일업 투자로드쇼
별지2-A	수요기업 PoC 협력의향서(확약서)	① (필수)
별지2-B	고객사 요구사항 확인서	② (선택·우대)
별지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전 프로그램(필수)
별지4	청렴 및 기술보호 이행 서약서	전 프로그램(필수)
별지5	참가확약서	⑤ (선정 통보 후 제출)

※ 별지1 참여신청서는 프로그램별 서식이 다르므로, 신청하는 프로그램의 서식을 확인하여 작성하여야 함

※ 복수 프로그램에 신청하는 경우 별지1 및 별지2는 프로그램별로 각각 작성하고, 별지3·별지4는 1부만 제출하여도 무방함

※ 별지5 참가확약서는 ⑤ 딥테크 스케일업 투자로드쇼 선정기업이 선정 통보 후 기한 (2026. 9. 29.) 내 제출하는 서식으로, 신청 단계에서는 제출하지 않음